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

발의연월일: 2020. 6. 3.

발 의 자:최인호·이학영·송옥주

임호선 • 박광온 • 김병욱

신영대 · 전재수 · 윤관석

황 희・박 정・허 영

오영환 · 장경태 · 강준혁

서영석 · 김두관 · 이수진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할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 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산업위기대응특 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선제적인 대응체계 등에 대한 규 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률 목적과 도 상이한 측면이 있는바,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지침의 수립, 지역산업활력제고 심의위원회의 설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역계획의 수립, 산업위기지역의 신청 및지정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특히, 이 법률안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업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포함하고 있는 바, 개정안은 이 규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인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8호)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138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3.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